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

1. 2006. 1. 23. 제2006-3호(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유동화전문회사가 고급오락장이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유동화자산)을 경락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음에도 이를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주된 이유는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할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해 재무구조의 건전화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됨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감사원 심사결정례 제 2001-132호, 2001. 11. 13)고 하는 입법취

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할 당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것인지 여부 및 양수(등기)한 부동산이 자산유동화계획에 포함되는 지 여부 등의 법령상 면제요건에 해당하면 그 후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지방세법상에서 발생된 제반사정은 위 면제요건을 달리 볼 하등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관련법령에 정한 유동화전문회사임은 물론 이 사건 부동산은 관계 기관에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포함된 것이 분명하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자산보유자로부터 직접 양수하지 않고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지만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방법으로는 관계법령상 채무자로부터 추심이나 법원경매를 통한 채권 회수 등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동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과정상 채권의 회수목적으로 법원경매에 의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

하는 경우도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라고 본 점(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세정 제 13407-606호, 2001. 6. 5.)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인 청구인이 2003. 3. 27.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타운 ○○호(760.690㎡, 대지권 2,942.200분의 111.399) 및 602호(690.025㎡, 대지권 2,942.200분의 106.127)의 근린·위락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제13호 가목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소재지 602호의 일부 291.826㎡(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안분된 취득가액(499,048,107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7,908,620원, 농어촌특별세 4,391,610원, 합계 52,300,230원을 2005. 7. 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고급오락장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할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가목 및 제120조제1항제12호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에서 현재까지도 이 사건 영업장을 계속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사치성재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같은 법 제291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부과한 처분은, 위 조항은 지방세법에 국한할 뿐 구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동화전문회사가 고급오락장이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유동화자산)을 경락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는데도 이를 계속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중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그 제4호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2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그 제1호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1조에서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에서 그 제13호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가목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그 제12호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 제1호에서 “자산유동화”라 함은 그 가목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 타목의 금융기관 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공사의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사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 자산유동화계획에는 그 제1호에서 그 제7호까지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 및 자산보유자에 관한 사항 및 자산유동화계획기간 및 유동화자산의 종류·총액·평가내용 등 당해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 및 유동화증권의 종류·총액·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1.11.22. 청구인은 ○○공사로부터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근저당권담보부채권 등과 그에 수반되거나 관련된 모든 권리의 양수 및 관리운용처분, 유동화계획서 작성, 유동화증권 발행 및 상환 등을 목적 사업으로 ○○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설립登記하였고, 2001. 1. 14. 금융감독원장은 ○○공사이사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채권으로 포함된 자산양도 등의 등록신청을 접수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2001. 12. 31. 청구인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감독원에 등록(등록번호 01-○○-00)하면서, 위 등록신청서상 자산유동화계획관계자로서 자산보유자 및 자산관리자는 ○○공사, 업무수탁인은 ○○유한회사, 수탁관리기관 ○○은행으로 지정하였고, 또한, 유동화자산관리방법, 유동화증권발행 및 상환계획,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 자산유동화계획관계자에 관한사항 등이 기재되었으며, 2002. 9. 30. 청구인은 ○○지방법원으로부터 ○○도 ○○시 ○○동 ○○번지 ○○타운 ○○호 근린시설(대중음식점) 760.690㎡ 및 대지권 2,942.200분의 111.399를 1,125백만원에, 위 소재지 6층 602호 위락시설(사우나) 690.025㎡ 및 대지권 2,942.200분의 106.127를 950백만원에 각각 경락(2001타경○○부동산임의경

매)받았고, 2003. 3. 27. 낙찰대금완납(상계) 증명원을 ○○지방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을 때, (주)○○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7. 11. 19. ○○관광호텔 대표 김○○외 4인과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03. 4. 7.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고, 2005. 4. 28.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현지사실조사결과 이 사건 영업장(291.826㎡)은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그 중 제602-2호 ○○룸살롱은 2003. 7. 5. ○○도 ○○시 ○○동 ○○번지 허○○에게, 그 중 ○-1호 ○○룸살롱은 2003. 7. 23. ○○도 ○○시 ○○동 ○○번지 심○○에게 각각 임대하였고, 2005. 7. 4. 처분청은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의 설립경위를 보면, ○○공사(자산보유자)가 금융기관 등의 부실채권을 공적자금으로 인수하였으며, 자산보유자는 위 채권을 2001. 6. 20. 국제입찰에 붙이자 ○○회사(입찰중개인)이 낙찰되었고, 낙찰된 채권(유동화자산)을 청구인(○○공사가 50% 지분 출자, 나머지는 ○○유한회사 등 출자)이 양수하였으며, 위 낙찰된 채권은 실사기준일이 2001.5.19.인 유동화대상자산 세부명세표에서 총채권수 1,739건, 담보자산수 2,435건으로 이곳에는 이 사건 부동

산도 포함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급오락장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할 당시 구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는데, 처분청에서 현재까지도 이 사건 영업장을 계속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므로 지방세법 제291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2003.12.31.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고, 지방세 제291조에서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사치성재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위 개별법 해당조항들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을 적용하였으나, 먼저, 위 개별법 해당조항들은 근거법률 및 입법취지 등이 상위할 뿐만 아니라 위 지방세법 조항은 동 법 제5장의 과세면제 및 경감에만 적용될 뿐 지방세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위

개별법들은 일반법과 특별법관계에 있어서 설령, 위 개별법 관련조항사이에 충돌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예외적인 조항이 없는 한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주된 이유는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할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해 재무구조의 건전화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됨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감사원 심사결정례 제132호, 2001.11.13.)고 하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할 당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것인지 여부 및 양수(등기)한 부동산이 자산유동화계획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의 법령상 면제요건에 해당하면, 그 후 구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지방세법상에서 발생한 제반사정은 위 면제요건을 달리 볼 하등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1.11월 청구인은 ○○공사로부터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근저당권담보부채

권 등과 그에 수반되거나 관련된 모든 권리의 양수 및 관리·운용·처분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한 사실, 2001.1월 금융감독원장이 ○○공사이사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채권으로 포함된 자산양도 등의 등록신청을 접수하였다는 통보내용, 2001.12월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감독원에 등록(등록번호 01-○○-00)하면서 그 계획서상에 유동화자산관리방법, 유동화증권발행 및 상환계획,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 자산유동화계획관계자에 관한사항 등이 기재된 내용, 2003.3월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낙찰대금완납(상계) 증명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관광호텔 대표 김○○외 4인은 (주)○○은행과의 작성한 여신거래약정서상의 채무자로 확인된 사실 등을 볼 수 있는데, 이들 사실들로부터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정한 유동화전문회사임은 물론 이 사건 부동산은 관계 기관에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포함된 것이 분명하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자산보유자로부터 직접 양수하지 않고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지만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방법으로는 관계법령상 채무자로부터 추심이나 법원경매를 통한 채권회수 등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동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과정상 채권의 회수목적으로 법원경매에

의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라고 본 점(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세정 13407-606호, 2001.6.5)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2006. 1. 23 제2006-16호(취득세 등 부과처분 기각)

법인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법인장부상 자산계정이 아닌 영업외비용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이러한 건설자금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고 회계처리상 영업외 비용과 이자비용 계정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번지 ○○센타 연면적 27,368.1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4.6.2.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세 등을 2004.6.9.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5.4.8. 청구인 법인의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중에서 건설자금이자(이하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라고 한다)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과소신고액 517,699,61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3,253,010원, 농어촌특별세 1,138,920원, 등록세 6,091,180원, 지방교육세 1,122,220원, 합계 21,605,330원(가산세 포함)을 2005.9.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축물 신축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추징은 기업회계기준 제7호에서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

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하지 않고 회계처리상 영업외 비용인 이자비용으로 기간비용화 하였으므로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서도 법인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법인장부상 자산계정이 아닌 영업외 비용계정으로 처리하였다면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법인장부상 자산계정이 아닌 영업외 비용계정에 계상하였을 경우 이러한 건설자금 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장부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

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2004.6.2. 신축·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그 이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2005.4.8.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중에서 일부가 과소신고되었고, 또한 건축물 신축에 따른 건설자금이자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05.9.12. 부과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축물 신축시 발생된 건설자금이자는 기업회계기준 제7호에서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하지 않고 회계처리상 영업외 비용인 이자비용으로 기간비용화하였으므로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서도 법인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법인장부상 자산계정이 아닌 영업외 비용계정으로 처리하였다면 동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므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고 회계처리상 영업외 비용과 이자비용 계정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해당함이 분명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에 대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2006.1.23. 제2006-24호(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동기를 장착한 선박건조용 고소작업차가 차량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선박건조용 고소작업차는 조선소 내에서 배를 건조하기 위하여 도크나 도크외곽의 육상 등을 운행하면서 작업인부가 탑승하여 배 측면 등에 도색 및 용접 등을 하는 것으로, 원동기를 장치하기는 하였으나 육상을 이동할 목적이 아니고,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기구로도 볼 수 없어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차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또한 지방세법 제104조제2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장비와 유사하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2에서 별표5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별표5에서 30번 기타건설기계는 이 표에 계기된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68호(2001.3.21.)에서 터널용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지정하였음을 볼 때 이와 유사하다고 하겠으나 선박건조용 고소작업차에 대해서는 특수건설기계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기계장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2.10. 수입·취득한 CH100C 멘리프츠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와 2004.6.22.부터 2005.5.1.까지 3차례에 걸쳐 (주)○○캐피탈과 (주)○○캐피탈로부터 리스 받은 고소작업차 16대(이하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 한다)에 대해,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의2에서 규정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으로 보아 청구인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가액 1,611,025,68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9,370,560원, 농어촌특별세 3,544,250원, 합계 42,914,810원(가산세 포함)을 2005.7.8. 부과고지 하였으나,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CH100C 멘리프츠 1대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3,490,400원, 농어촌특별세 3,258,200원, 합계 3,776,450원은 기각하고, (주)○○캐피탈과 ○○캐피탈(주)로부터 리스한 굴절식고소작업차 16대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35,880,160원, 농어촌특별세 3,258,200원, 합계 39,138,360원은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유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 및 리스차량은 선박 건조시 선체의 높은 곳에 있는 벽면의 용접 및 도장시 이용하는 고소작업 장비로서 원동기로 움직이기는 하나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차량이 아니라 선박건조 작업을 위한 작업반경내에서 이동하는 장비이므로, 이 사건 차량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의2 규정의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히 이 사건 차량 및 리스차량이 지방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에서도 원동기를 장치하긴 하였으나 육상을 이동할 목적이 아니며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기구로도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898, 2005.5.26.)고 회신한 사실을 보더라도 이 사건 차량 및 리스차량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원동기를 장치한 선박건조용 고소작업차가 차량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

조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하고, 동법 제104조제2호에서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3조의2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와 삭도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제2의2호에서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5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그 별표5에서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로 건설기계명을 열거하면서 30번 기타건설기계는 이 표에 계기된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행

정자치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68호에서 터널용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지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12.10. 수입·취득한 이 사건 차량 1대와 2004.6.22.부터 2005.5.1.까지 3차례에 걸쳐 (주)○○캐피탈과 (주)○○캐피탈 등으로부터 시설대여 받은 이 사건 리스차량 16대에 대해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의2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 및 리스차량은 선박 건조시 선체의 높은 곳에 있는 벽면의 용접 및 도장시 이용하는 고소작업 장비로서 원동기로 움직이기는 하나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차량이 아니라 선박건조 작업을 위한 작업반경내에서 이동하는 장비이므로, 이 사건 차량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의2 규정의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히 이 사건 차량 및 리스차량이 지방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에서도 원동기를 장치하긴 하였으나 육상을 이동할 목적이 아니며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기구로도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898, 2005.5.26.)고 회신한 사실을 보더라도 이 사건 차량 및 리스차량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취득한 고소작업차는 조선소내에서 배를 건조하기 위하여 도크나 도크외곽의 육상 등을 운행하면서 작업인부가 탑승하여 배 측면 등에 도색 및 용접 등을 하는 것으로서 원동기를 장치하기는 하였으나 육상을 이동할 목적이 아니고,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기구로도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차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사건 차량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장비와 유사하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 2에서 별표5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별표5에서 30번 기타건설기계는 이 표에 계기된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68호(2001.3.21.)에서 터널용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지정하였음을 볼 때 이와 유사하다고 하겠으나 선박건조용 고소작업차에 대해서는 특수건설기계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차량은 기계장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고 판단되고, 이 사건 리스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제2항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 기계장비·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로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시설대여업자가 아니라 시설이용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 리스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리스차량 중에서 P-150A 15M 굴절식고소작업차 1대에 대해서는 (주)○○캐피탈에 납세의무가 있고, T-260N 20M 직진식고소작업차 15대에 대해서는 ○○캐피탈(주)에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차량 및 리스차량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2006. 2. 27. 제2006-31호(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 임차인이 식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대학교의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차한 청구외 (주)○○(대표이사 이○○) 등이 식당, 이발소, 세탁소, 매점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인근 주민들이 거의 이용하지 아니하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나 일반학생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각 시설 이용요금도 대체로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수입도 기숙사의 청소용역 및 시설 관리용역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회계장부상 복리후생비 및 시설용역비 등의 계정과목에서 입증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기숙사 거주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같은 취지의 판례, 대법원 2004두9265, 2006.1.13.)고 하면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1998.6.18.부터 2003.4.7.까지 취득한 ○○시 ○○구 ○○동 ○○번지의 33필지의 토지 30,222.96㎡ 중 같은 동 591-1번지의 1필지의 토지 16,528.40㎡ 상에 기숙사용 건축물 16,992.43㎡(이하 “○○관”이라 한다)를 2000.11.7. 신축하고, 같은 동 58번지의 31필지의 토지 13,694.56㎡ 상에 기숙사용 건축물 14,075.72㎡(이하 “○○관”이라 한다)를 2004.2.10. 신축한 후 지방세법 제

107조제1호 및 같은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005.6.20.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김○○외 1인)의 현지 확인에서 ○○관 건축물 16,992.43㎡ 중 858.4㎡는 2002.3.1.부터 △△관 건축물 14,075.72㎡ 중 981.10㎡는 2004.3.1.부터 청구의 ○○주식회사(대표이사 이○○)등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임대한 건축물 1,839.5㎡와 그 부속토지 1,785.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 2,253,650,54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및 구 같은 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제1항제3 및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975,960원, 농어촌특별세 4,957,990원, 등록세 28,105,060원, 지방교육세 5,174,890원, 합계 96,213,900원(가산세 포함)을 2005.9.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필수적 후생복지시설인 식당 등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비변상적인 범위 내에서 임대하여 식당, 이발소, 세탁소 등을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징수한 임대료 전액을 기숙사 건

축물의 유지관리비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1,785.79㎡ 중 8,987㎡는 2000.6.7.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일로부터 자진신고 납부기한인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2005.9.15.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지방세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과 고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학교법인이 신축한 건축물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등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 등기·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

특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에서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정사유가 발생하여 추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

인은 1998.6.18.부터 2003.4.7.까지 취득한 ○○시 ○○구 ○○동 ○○번지의 33필지의 토지 30,222.96㎡ 중 같은 동 ○○번지의 1필지의 토지 16,528.40㎡ 상에 기숙사(○○관)용 건축물 16,992.43㎡를 2000.11.7. 신축한 후 2002.3.1.부터 동 건축물 중 858.4㎡를 청구의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와 2인에게 임대하고 2004.2.10. 신축한 같은 동 58번지의 31필지의 토지 13,694.56㎡ 상의 기숙사(○○관)용 건축물 14,075.72㎡ 중 981.10㎡를 2004.3.1.부터 청구의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와 2인에게 임대함에 따라 임대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매년 임대료(2001년도: 67,198,550원, 2002년도: 105,800,000원, 2003년도: 117,727,280원, 2004년도: 118,909,090원, 2005년도: 174,000,000원)를 받고 있으므로 이는 학교용 기본재산이 아니라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판단하고 있고 청구인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필수적 후생복지시설인 식당 등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게 되었고 정수한 임대료 전액을 기숙사 건축물의 유지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대학교의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청구의 (주)○○(대표이사 이○○) 등이 식당, 이발소, 세탁소, 매점 등을 운영하고 있어도 인근주민들이 거의 이용하지 아니하며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관 : 880명, ○○관 : 700명)이나 일반학생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각 시설 이용요금도 대체로 시중가격보다 저렴(한식 정식의 경우 학생, 교직원 : 2000원)하게 운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임대수입도 기숙사의 청소용역 및 시설 관리용역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청구인의 회계장부상 복리후생비 및 시설용역비 등의 계정과목에서 입증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기숙사 거주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2004두9265, 2006. 1. 13).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2006. 1. 23. 제2006-36호(등록세 등 부과처분 경정)

납세의무자가 등록세 신고서상 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증빙자료만을 첨부하여 등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과세관청은 그 자료를 근거로 세액을 산출하여 등록세 납부서를 교부한 경우 등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결정요지】

납세의무자가 등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고서상 각 기재사항을 누락하였다고는 하나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매매대금 정산 및 지급합의서, 지방세감면신청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과세표준액·세율·세액·납기·납부장소·납기일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을 기재한 등록세 납부서를 교부한 이상 적법한 신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6.10. ○○시 ○○구 ○○동 ○○번지의 2필지 토지 1,439.5㎡ 및 그 지상건축물 11,826.7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신고서상 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신고서를 제출한 후 2005.6.13. 처분청으로부터 등록세 납부서를 교부받은 다음 2005.6.14. 등록세 등 408,000,000원을 납부하자 이를 수

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이 등록세 신고 당시 신고서상 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등기일 이후 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등기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34,000,000,000원)으로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같은 법 제151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68,408,000원, 지방교육세 6,881,600원, 합계 75,289,600원을 2005.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5.6.10. 이 사건 부동산 등기에 따른 등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는바, 등록세 신고서상의 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지방세감면신청서에도 감면받고자 하는 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기재내용에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이는 적법한 것으로 처리하고 등록세 신고서는 부적법한 신고서류로 본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주의력만 발휘하였다면 쉽게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흠에 대해 신고서

상 기재사항인 취득물건,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형식상의 단순한 이유를 들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납세의무자가 등록세 신고서상 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증빙자료만을 첨부하여 등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과세관청은 그 자료를 근거로 세액을 산출하여 등록세 납부서를 교부한 경우 등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7호에서 신고납부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

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1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2제1항에서 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법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5.12.31. 행정자치부령 제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3제1항에서 영 제10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신고는 별지 제48호의3 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6.10.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상에 납세의무자와 그 대리인 이름만을 기재하고, 지방세감면신청서상에는 신청인, 감면대상 토지 소재지, 감면세목, 과세표준액 등을 기재한 채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등기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5.6.13. 등록세 납부서를 교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등록세 신고를 하면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는바, 등록세 신고서상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다고는 하나 지방세감면신청서에도 감면받고자 하는 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이는 적법한 것으로 처리하고 등록세 신고서는 부적법한 신고서류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51조 본문 및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가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2제3항에서 등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신고서상 기재사항을 누락하였으므로 신고행위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겠고, 설사 신고행위가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비록 2005.6.10. 등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고서상 각 기재사항을 누락하였다고는 하나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매매대금 정산 및 지급합의서, 지방세 감면신청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과세표준액·세율·세액·납기·납부장소·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을 기재한 등록세 납부서를 2005.6.13. 교부한 이상 적법한 신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이 사건 부동산 등록에 따른 등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등기 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에 접수한 이후에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